

「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」 신규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행동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“선물”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·숙박권·회원권·입장권·상품권·화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행동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~3 생략</p> <p>4. “선물”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·숙박권·회원권·입장권·상품권·화환·<u>모바일 이용권 또는 할인권</u>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	<p>-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쿠폰 등 수수 예방</p> <p>※ 감사실 부패영향평가 의견 반영</p> <p>[고객제안]</p>
<신설>	<p>제10조의2(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) 임직원은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 등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 및 가족 등 타인의 취업을 위하여 직·간접적으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- 취업청탁 금지 명문화</p> <p>[권익위 권고사항 반영]</p>
<p>제13조(알선·청탁 등 금지) ①, ② (생략)</p> <p>③ (신설)</p> <p>④ (신설)</p>	<p>제13조(알선·청탁 등 금지) ①,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임직원은 퇴직한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청탁이 적발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</p>	<p>- 퇴직임직원의 청탁행위 근절</p> <p>[권익위 권고사항 반영]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	한다	
<p>제13조의2(전관예우 등 금지) ①~④ (생략)</p> <p>⑤(신설)</p>	<p>제13조의2(전관예우 등 금지) 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임직원은 공단 직무관련업체에 재취업한 제53조에 따른 퇴직 당시 부장 이상 직원과의 공적·사적 등 모든 접촉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- 직무관련 부장이상 퇴직 임직원 접촉시 신고의무 부여</p> <p>[권익위 권고사항 반영]</p>
<신설>	<p>제13조의3(계약업무 공정성 저해행위 금지)①조사, 점검, 검사, 계약, 심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의2 제1항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부적절한 접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 임직원은 공사·구매·용역계약의 검사·감독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현지공장검사 또는 조사 목적 등으로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- 조사 담당 임직원 등의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</p> <p>- 계약자가 부담하는 해외출장 금지</p> <p>[권익위 권고사항 반영]</p>
<p>제19조(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)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·용역·물품구매의 입찰·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에</p>	<p>제19조(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	<p>-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,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 (신 설) ③ (신 설)</p>	<p>② <u>임원 및 처장이상의 직원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사·용역·구매의 계약·검사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③ <u>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있는 자에게 신기술의 사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	<p>금지</p> <p>※ 감사실 부패영향평가 의견 반영</p> <p>- 특정물품 사용 지정 금지</p> <p>※ 감사실 부패영향평가 의견 반영</p> <p>[권익위 권고사항 반영]</p>
<p>제27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 및 대가기준)</p> <p>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·공청회·토론회·발표회·심포지엄·교육과정, 회의 등에서 강의, 강연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 등(이하 "외부 강의·회의 등"이라 한다.)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요청자, 요청사유, 장소,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외부강의 등 개시 <u>전일까지</u>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27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 및 대가기준)</p> <p>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·공청회·토론회·발표회·심포지엄·교육과정, 회의 등에서 강의, 강연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 등(이하 "외부 강의·회의 등"이라 한다.)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요청자, 요청사유, 장소, 일시, <u>대가 및 요청공문 등을</u>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외부강의 등 개시 <u>전까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</u>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<u>임직원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</u></p>	<p>- 외부강의 관리체계 강화 및 과도한 외부강의 시간 제한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②, ③ (생략)</p> <p>④ 임직원이 소속한 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강의·회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<u>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</u>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. 임직원이 고위직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장이, 임직원이 부장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소속한 지역본부장이 이를 금지할 수 있다.</p>	<p><u>강의·회의 등에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②,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임직원이 소속한 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강의·회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<u>유착발생·비밀 또는 정보 누출 등의</u>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. 임직원이 고위직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장이, 임직원이 부장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소속한 지역본부장이 이를 금지할 수 있다.</p>	<p>- 직무상 유착 개연성 예방</p> <p>[권익위 권고사항 반영]</p>
<p>제28조(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8조(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<u>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</u>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-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를 통한 경조사 통지 금지</p> <p>- 내용 구체화</p>
<p>제36조(직무청려계약의 적용대상) 이사장, 감사, 상임이사, 실·원·지역본부장(이하 '임원등' 이라</p>	<p>제36조(직무청려계약의 적용대상) 이사장, 감사, 상임이사, <u>본부</u>·실·원·지역본부장(이하 '임원등' 이라</p>	<p>- 해외사업본부장 포함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한다.)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	한다.)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	
제45조(징계 등) ①, ② (생략) ③ (신 설)	제45조(징계 등) ①,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이사장은 임직원의 부패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내·외부 적발을 구분하여 각각 사내 전산망 및 홈페이지에 현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</u>	- 비위행위자 공개 의무 부여 [권익위 권고사항 반영]
제48조(행동강령책임자의 업무)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 1. 행동강령의 제정·개정 관련 업무 2. 행동강령 및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상담 3. 행동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4. 행동강령의 위반행위 신고·접수·처리·조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5. 기타 특별히 지시 받은 사항 처리 6. (신 설) ②~④ (생략)	제48조(행동강령책임자의 업무)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 1. 행동강령의 제정·개정 관련 업무 2. 행동강령 및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상담 3. 행동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4. 행동강령의 위반행위 신고·접수·처리·조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5. 기타 특별히 지시 받은 사항 처리 6. <u>부장 이상 퇴직 임직원의 직무관련업체 재취업 현황관리 및 접촉현황 공개</u> ②~④ (현행과 같음)	-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관리 및 접촉현황 공개 의무 [권익위 권설탕 반영]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53조(퇴직직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) ①부장 이상 직원(단,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거 특별승진을 한 직원은 제외한다.)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퇴직 전 2년 동안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관련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단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~⑦ (생략)	제53조(퇴직직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) ①부장 이상 직원(단,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거 특별승진을 한 직원은 제외한다.)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<u>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해당하는 퇴직 전 2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</u>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단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~⑦ (현행과 같음)	- 문구 명확화
<신 설>	<u>부 칙 (2015.10.00.)</u> 제1조(시행일) 이 행동강령은 2015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13조의2 제5항, 제27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 6호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13조의3 제2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.	

현행	개정(안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신 설></p>	<p>(별지 제12호 서식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71 315 1203 667"> <thead> <tr> <th colspan="10">퇴직자(부장이상) 접촉관리대장</th> </tr> <tr> <th rowspan="2">관 리 번 호</th> <th rowspan="2">접 촉 일 시</th> <th colspan="3">접촉직원</th> <th colspan="3">접촉퇴직자</th> <th colspan="2">접촉목적</th> <th rowspan="2">접촉장소</th> </tr> <tr> <th>소속</th> <th>직 위</th> <th>성 명</th> <th>소 속</th> <th>직 위</th> <th>성 명</th> <th>공적/ 사적</th> <th>세부 사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퇴직자(부장이상) 접촉관리대장										관 리 번 호	접 촉 일 시	접촉직원			접촉퇴직자			접촉목적		접촉장소	소속	직 위	성 명	소 속	직 위	성 명	공적/ 사적	세부 사유																							<p>- 제13조의2 제5항 신설에 따른 퇴직자 접촉관리대장 신설</p> <p>[권익위 컨설팅 반영]</p>
퇴직자(부장이상) 접촉관리대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 리 번 호	접 촉 일 시	접촉직원			접촉퇴직자			접촉목적		접촉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소속	직 위	성 명	소 속	직 위	성 명	공적/ 사적	세부 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